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대상) 공단에서 연 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중에 있는 수험자
 -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응시 제한
- ❖ (시험응시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주말 제외)*
 - * 신청기한이 주말인 경우, 응시가능여부는 평일에 별도 확인 요망
- ❖ (평가방법별 조치사항)

구분	필기시험 (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실기시험 (작업형)
대상 종목	◆ 연 1회 시행종목	
대상자	◆ 확진자(자가격리자) 중 신청자	◆ 시험기간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자 (신청 시 확진자에 한함)
조치 사항	◆ 병원·생활치료센터 및 별도 지정된 장소에 (입소)시험응시	◆ 응시기회 보장 ① 필기면제만료자는 면제기간 연장 조치 ② 시험기간 내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조치(일정 가능 시) ③ 시험기간 내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불가 시, 응시 불가하나, 면제기간 연장 조치 검토
시험 응시일	◆ 해당종목 시험일	◆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격리해제 후 해당 회차 시험기간 내 가능일자
제출 서류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②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공단에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유선) ◆ 공단대표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비고	-	◆ 신청자 중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실기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자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통보 ◆ 전문자격시험은 관계법령 및 소관부처 의견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신청 연락처 및 메일 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484, ✉ exam@hrdkorea.or.kr

❖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상기 시험응시 신청기한, 제출서류·방법 준수
- 단,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 할 수 있음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격리기간이 해제되어야 퇴소 가능하며, 시험 응시 후 즉시 퇴소 불가

2022년 5월 2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시험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접수)서

수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이메일	

접수한 시험정보

접수한 시험 정보				
필·실기 구분	회차	등급 및 종목	시험일	시험장소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 ❖ (대상)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면접) 중 연 1회 시행하는 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중에 있는 수험자**
 - ↳ 연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헌법재판소 취지 및 시험·방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대로 확진자 응시제한
 - ※ 단,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작업형 시험 수험자는 공단 담당자에게 신청 응시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 조치 가능
- ❖ (시험응시 신청기간)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신청기간 내에 공단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 후 시험장 준비가 가능하므로 신청기간 경과 시 시험응시 불가)
- ❖ (제출서류) ❶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❷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
- ❖ (제출방법) 시험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신청의사(유선)를 알리고,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 시험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484, ✉ exam@hrdkorea.or.kr

- ❖ (시험응시 방법) 입원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시험응시
- ❖ (안내)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유의사항

- ❖ 시험응시 가능 확진자 대상이 아닐 경우, 관련 조치 불가
-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 시험응시 신청 후 확진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 불가할 수 있음
- ❖ 확진자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시험응시를 신청하며,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조치가 불가할 경우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3**시설사용 허가 확인서****확진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시설사용 허가 확인서** **수험자 시험정보**

성명		생년월일	
시험명	제31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필기)	시험일	

 수험자 시험응시 여부 관련 주치의 확인사항

수험자의 시험응시 가능여부	가능(), 불가()	사유(불가 시)	(서명 또는 인)
		주치의(성명)	

 시설사용 허가 관련 병원 관계자 확인사항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위해 다음 시험프로세스별 병원측 협조사항을 참고하시어 외부시험위원의 확진자 입원실 입실 및 해당 입원실의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시험위원 입실	가능(), 불가()	사유(불가 시)	
시설사용 가능여부	가능(), 불가()	사유(불가 시)	
담당자 연락처	☎		

❖ 시험프로세스별 병원 협조사항

구분	주요내용	병원 협조사항
시험위원 입실	◆ 공단에서 위촉된 시험위원이 확진자 입원실 방문	◆ 해당 기관(시설) 의료진에 준하여 시험위원 방역조치 실시
수험자 시험준비	◆ 시험에 응시하는 확진자의 좌석 정리 등 시험시행을 위한 준비	◆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수험자 교육	◆ 시험위원이 매뉴얼에 따라 수험자 교육 실시	◆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문제지 지급	◆ 병원 관계자가 문제지, 답안카드(지) 등을 지급하도록 조치	◆ 가급적 주치의 또는 담당 의료진 등이 직접 전달
시험 시행	◆ 수험자는 시험 시행 ◆ 시험위원은 부정행위 감시	◆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문제지 회수	◆ 시험 종료 선언 후 병원 관계자가 답안 카드(지) 또는 문제지를 회수하도록 조치	◆ 확진자와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치의 등이 회수하여 시험위원에게 전달
시험종료	◆ 시험위원은 소속기관으로 복귀	◆ 확진자 건강 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시험응시에 대한 주치의 확인사항과 시설사용 허가 관련 확인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